

의안번호	2200496
의 퇴 인	박홍배의원
회 답 일	2024. 6. 25.
추계번호	24D0872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8조의2 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	-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-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8조의2 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 상해·사망 등의 보상(안 제4조)

- 현행법¹⁾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²⁾할 수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

1) 현행법 제42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현행법 시행령 제37조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

없음³⁾

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될 보상금의 지급 금액만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법률에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 상해 또는 사망 발생건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

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

3.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: 치료비 전액. 다만,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(이하 이 조에서 "보상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~⑦ (생략)

3)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따라,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됨